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0

# 광 주 지 방 법 원

## 제 2 민 사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9나60836 배당이의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
| 원고보조참가인 | T 주식회사 |
| | [redacted] |
| | [redacted] |
| 피고, 피항소인 | [redacted]군 |
| | [redacted] |
| | [redacted] |
| 제 1 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 6. 선고 2016가단11664 판결 |
| 환송 전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나51524 판결 |
| 환송 판결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11. 15. |
| 판 결 선 고 | 2019. 12. 13. |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0

2. 광주지방법원 [redacted]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1,660,663원을 100,660,663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1].

## 이 유

###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가. 피고는 2007. 2. 20.자 조정결의를 통하여 원고의 1992년도 취득세 484,476,740원, 1994년도 재산세 53,299,090원 중 48,175,600원, 2003년도 종합토지세 3,020원을 모두 0원으로 감액조정함으로써, 원고의 위 체납 취득세 등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소멸한 체납 취득세 등에 대하여 압류 및 교부청구를 통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원이 삭제되어야 한다.

---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30. 작성한 배당표를 제출하면서 위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다가, 2016. 11. 29.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위 법원 D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30.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건번호로, 원고의 청구원인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감안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 사건'에 관한 청구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0

나. 피고는 원고의 체납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으므로, 결손처분 취소 없이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취소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교부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압류 또는 위법한 교부청구를 통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1)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1호는 "결손처분이 된 때"에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하였다.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세의 결손처분 취소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내용은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과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으로 조문 위치만 바뀌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물론 현행 지방세징수법 하에서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0

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지방세의 체납처분은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지방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는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에 충실하도록 더욱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침익적 속성을 갖는 체납처분에 대한 절차적 규율 및 통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 제96조 제2항 본문은,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지방세에 대하여 다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미리 마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법 조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에게 절차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체납처분이 과거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믿고 있을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이 다시 개시될 예정임을 알리는 한편,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등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0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체납자가 감수하여야 할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하는 절차적 적법성을 부여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체납처분으로 지방세채권이 이미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외형상 잔존하는 현상을 해소한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52조 내지 제54조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체납세액의 납부를 마친 뒤에 과세관청을 상대로 결손처분 자료의 폐기 내지 삭제를 요구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 자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은,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앞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절차상 의무를 과세관청에게 지움으로써, 결손처분 내지 그 자료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파생적으로 입게 될 사실상의 불이익을 간접적으로나마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은 지방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0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규정들을 위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교부청구에 기해서는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체납 취득세 등 532,655,36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제1심 공동피고 B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이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세액을 포함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교부권자로서 101,660,663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라 선행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사실을 납세자인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한 교부청구 중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은 절차적 요건이 흠결되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1,660,663원을 위 금액에서 원고가 구하는 1,000,000원을 뺀 100,660,663원으로 경정해야 한다.

**4.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0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김성준

판사 박주영